

세계해사대학(W·M·U) 연수를 마치고(Ⅱ) - 국제해사기구(IMO)조직과 활동

한국어선협회 기술개발부

주임기술원 이 영 섭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던 종전의 정부간해사협의기구(IMCO: Intergovernment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를 업무의 확대, 발전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현재의 명칭인 IMO로 1982년 5월 하순에 바꾼 것이며, 국제연합헌장 제 57 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경제사회 이사회와 관계를 갖는 국제해사 전문기구이다.

우리나라와 IMO의 관계는 1962년 4월 10일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무역증대에 따른 해운산업의 급진적 발전과 조선공업의 국가 기간산업화에 따른 건조능력의 증가와 실질적 수주, 건조활동의 활발성으로 명실공히 IMO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해운분야의 경우는 바다를 운송의 장(場)으로 하기 때문에 해상 안전, 해양의 보존이란 측면에서 강조되어지고, 조선분야의 경우는 한단계 아래 즉 해운의 수송수단, 공급이 주요목적인 만큼, 해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물론 이에 부수되는 해양관련 사항을 만족시켜 주는 선박을 제공하여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누구나가 다 인정하듯, 해양의 이용은 오늘날의 3차산업인 해운보다도 해양을 생산의 장(場)으로 이용한 1차산업인 어선어업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원양어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업이란 연근해를 근간으로 하였기에 국제간의 해사문제에서 소외되거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은 역사성이나 식량생산 및 관련 종사자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리라

IMO와 국내의 관련문제는 여러 관계기관이 있겠으나, 대외 창구는 해운항만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항만청에서 IMO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차에 걸쳐 발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수산에 관련한 사항은 차기호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IMO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적어 본다.

1. 개 요

IMO창설을 위한 협약은 1948년 제네바에서 가진 국제해사회의(The United Nation Maritime Conference)에서 해사문제만에 전적으로 기여하는 국제적 기구로 “국제해사기구”를 창설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1958년 3월 17일 “국제연합해사기구”협정의 효력발생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 발효될 때까지 10년이 걸렸으며, 제 1차 총회는 1959년 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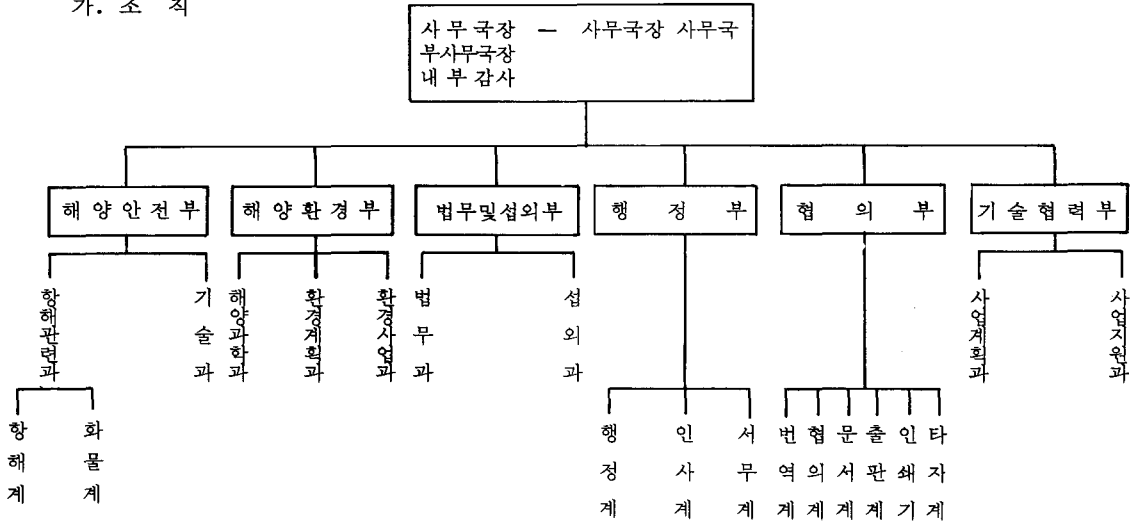
1984년말 현재 정회원국 125개, 준회원국 1개 및 비회원국 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MO의 운영경비를 IMO협약 A.76(IV)의 원칙에 따라 할당된다. 참고로 제 13차 회계년도(1984~1985)의 후반기인 올해 예산은 미화 13,955,700 달러이다.

제 1차 총회이후 지금까지 IMO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 30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해사안전과 해양오염방지에 관련된 많은 규칙과 권고를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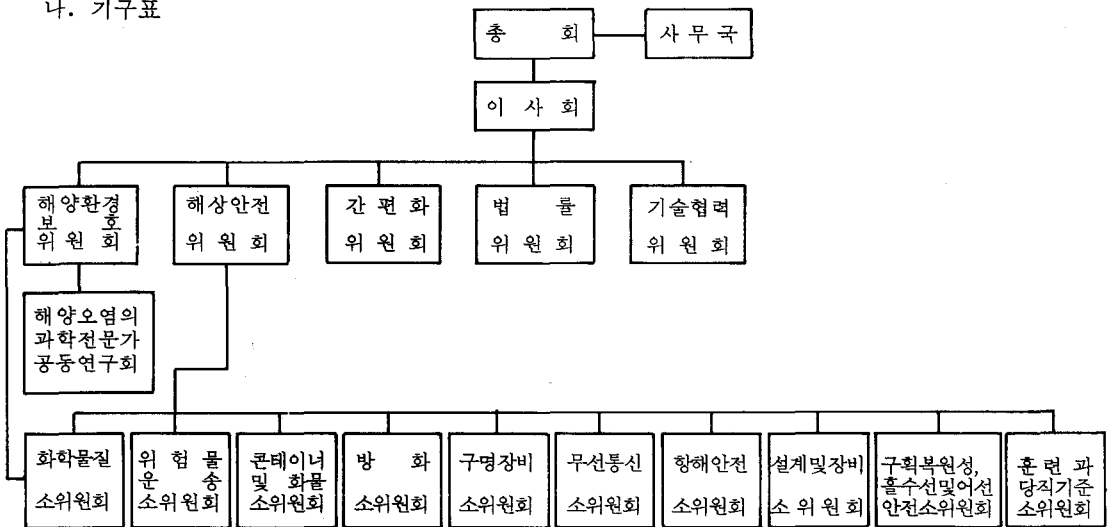
2. 조직과 기구의 구성

IMO의 조직과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가. 조 직



나. 기구표



3. 기구의 주요기능

마다 개최한다.

가. 총회(A; Assembly)

총회는 IMO의 최고 통치기관으로 전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업무계획의 결정, 추천사항의 승인, 이사국 선정, 사무국장의 임명승인, 예산에 대한 투표권과 회계규칙의 승인을 한다. 매 2년

나. 이사회(C; Council)

총회에서 선출된 24개국 대표로서 구성되고, 임기 2년,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며, 각종 방침 및 예산을 결정한다.

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해양오염의 방지 및 오염의 책임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IMO가 정식으로 발족되기 전인 1954년의 해상기름오염방지협약 (1954 Oil POL.)을 시작으로, 1973/1978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의정서 (1973/1978 MARPOL), 1973년 공해상에서 유류 이외의 물질에 의한 오염발생시 개입에 관한 의정서와 1972년의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이 있으며, 이 협약들을 수차례 걸쳐 개정하였다. 그리고 본위원회 산하에 해양오염의 과학적연구를 위한 전문가 모임(GESAMP: 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Pollution)을 두어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오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년 2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라. 해상안전위원회 (MSC; Marine Safety Committee)

전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년 2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일반적 항해안전에 관한 사항, 어선 안전규칙, 항로표지, 선박의 구조 및 장비, 해상충돌예방규칙, 위험선적화물, 구명설비, 무선통신 훈련 및 당직, 자격기준, 탐색과 구조 등 해상안전에 관한 제반연구를 취급한다. 이 위원회에서 제정된 것은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의 다수가 있으며, 다음의 소위원회를 갖고 있다.

1) 화학물질소위원회 (BCH; Sub-Committee on Bulk Chemical)

화학물질운송에 따른 해상의 위험발생에 관한 제반 문제를 취급하는 소위원회로 최근 들어 그 취급업무의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다. 또한 이 소위원회는 기구표에서 보듯, 업무성격상 해양환경보호위원회와도 연계되어 있다.

2) 위험물운송소위원회 (CDG; Sub-Committee on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위험물의 운송에 따르는 해상에서의 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하며, 1971년의 핵물질 수송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NUCLEAR 1971이 있다.

3) 컨테이너 및 화물소위원회 (BC; Sub-Committee on Containers and Cargoes)

컨테이너조약의 실시와 화물 및 크레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1974년의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수송에 관한 "아티네협약"과 동 협약의 1976 의정서가 있다.

4) 방화소위원회 (FP; Sub-Committee on Fire Protection)

각종 선박의 방화, 방폭 및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방화구조등을 다루고 있다.

5) 구명장비소위원회 (LSA; Sub-Committee on Life Saving Appliances)

해상사고시 최종적 보호수단인 구명설비를 다루는 위원회를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안을 창출하여 각종 협약에 반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은 없다.

6) 무선통신소위원회 (COM; Sub-Committee on Radio Communication)

무선전신과 무선전화에 관한 업무를 연구, 발전시켰으며, 최근 인공위성에 의한 통신수단의 발달과 함께 이에 따른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1979년 국제해양위성기구에 관한 협약과 이의 운용에 관한 협약을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7) 항해안전소위원회 (NAV; Sub-Committee on Safety of Navigation)

안전항해를 위한 업무를 취급하며, 특히 항해분리와 해협에서의 항해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팔목할만한 성과는 1974년 해상충돌예방규칙의 제정이며, 이로 인한 해상충돌 사고가 급격히 줄어든 보고가 있다.

8) 설계 및 장비소위원회 (DE;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Equipment)

주로 위험물 운반선, 화학물질 운반선 및 액화

가스 운반성 등의 선체구조에 대한 설계와 부수적인 장비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9) 복원성, 흡수선 및 어선안전소위원회 (SLF : Sub-Committee on Stability and Load Lines and on Fishing Vessel Safety)

선박의 기획, 복원성 및 만재흡수선을 취급하던 복원성 및 만재흡수선 소위원회와 어선안전소위원회가 통합되어 오늘날 본 소위원회가 됐다. 어선안전소위원회의 업무는 이제까지 동일한 해양을 배경으로 활동하면서 IMO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차의 우여곡절 끝에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트리몰리노스 국제협약을 성안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미발효 상태이다.

10) 훈련 및 당직기준소위원회 (STCW, Sub-Committee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을 설정 개발함으로써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해양환경보전을 도모코져 하고 있으며, 1978년 이에 관한 협약을 만들었다.

마. 간편화위원회 (FAL; Facilitation Committee)

해상운송 및 여행에 관한 문제, 해상운송의 촉진과 불필요한 지연방지를 위한 방안제정, 국제항에 종사하는 선박의 입출항 절차 및 문서에 관한 요건완화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967년 총회에서 세계적으로 적용키로한 일반신고, 화물신고, 선용품신고, 선원소지품신고, 선원목록 및 여객목록의 양식이 제정되었고,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1965)이 있다. 전회원국으로 구성되고,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가 개최된다.

바. 법률위원회 (LEG; Legal Committee)

IMO와 관련한 법률상 문제,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에 따른 국제보상기금 및 배상청구에 대한 책임한계 등을 다루며 본위원회는 1967년 Torrey Canyon 호의 해난사고에 대한 법적 필요성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전회원국으로 구성되고 매년

2회 개최된다.

사. 기술협력위원회 (TCD; Technic Cooperation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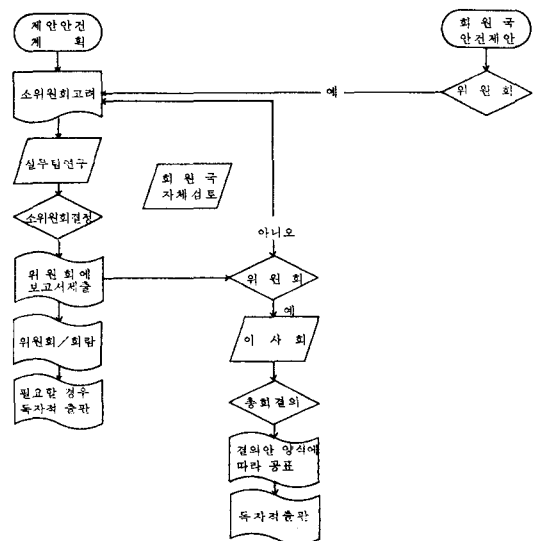
IMO회원국중 개발도상국 및 미개발국의 기술자문과 원조제공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국제기구의 개발계획위원회(UNDP)의 위촉 또는 자문 및 자체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범위는 해상의 안전, 해상행정, 해사법해기사의 훈련, 항해상 안전, 통신과 항로표지선박의 건조, 설계, 구조 등 전반적인 기술분야이며, 전회원국으로 구성되고 매년 1회씩 개최된다.

이제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된 내용으로 기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고, 분야별로 필요한 상세사항은 해당기구의 문서들을 따로이 구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각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명칭 다음 괄호안에 표시된 영문 대문자 약어는 문서상에 기재하는 약호임을 참고 바란다.

4. 협약의 제정 과정과 종류

가. 협약의 제정과정

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의제는 다음의 흐름도에 따라 처리된다.



나. 협약의 종류 및 발효

번호	협약명	약호	발효일	아국발효일
1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1974	1980. 5. 25	1980. 3. 31
2	1978년 해상인명안전협약 의정서	SOLAS PROT 1978	1981. 5. 1	1983. 3. 2
3	1972년 해상충돌예방규칙	COLEG 1972	1977. 7. 15	1977. 7. 29
4	1973년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	MARPOL 1973	1983. 10. 2	1984. 10. 23
5	1978년 MARPOL 1973 의정서	MARPOL PROT 1978	1983. 10. 2	1984. 10. 23
6	1965년 해상교통 간소화 협약	FAL 1965	1967. 3. 5	미 발효
7	1966년 만재홀수선협약	LL 1966	1968. 7. 21	1969. 10. 10
8	1969년 선박톤수 측정협약	TONNAGE 1969	1982. 7. 18	1983. 3. 7
9	1969년 공해상에서의 유류오염 해난 발생시 중재에 관한 협약	INTERVENTION 1969	1975. 5. 6	미 발효
10	1973년 INTERVENTION 1969 의정서	INTERVENTION PROT 1973	미 발효	미 발효
11	1969년 유류오염의 민사책임 협약	CLC 1969	1975. 6. 19	1979. 3. 18
12	1976년 CLC 1969 의정서	CLC PROT 1976	1981. 4. 8	미 발효
13	1971년 특수운송여객선 협정	STP 1971	1974. 1. 2	미 발효
14	1973년 STP 1971 의정서	STP PROTOCOL 1973	1977. 6. 2	미 발효
15	1971년 핵물질 수송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 한 협약	NUCLEAR 1971	1975. 7. 15	미 발효
16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기금설치 에 관한 협약	FUND 1971	1978. 10. 16	미 발효
17	1976년 FUND 1971 의정서	FUND PROT 1976	미 발효	미 발효
18	1972년 컨테이너 안전협약	CSC 1972	1977. 9. 6	1979. 12. 18
19	1974년 여객 및 수화물수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	PAL 1974	미 발효	미 발효
20	1976년 PAL 1974 의정서	PAL PROT 1976	미 발효	미 발효
21	1976년 배상청구에 대한 책임한계	LLMC 1976	미 발효	미 발효
22	1977년 "트리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SFV 1977	미 발효	미 발효
23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 및 당직기준	STCW 1978	1984. 4. 28	미 발효
24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	SAR 1979	1985. 6. 22	미 발효

◇ 제 규정 준수하여 안전조업 유지하자 ◇